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1. 12 선고 2019나144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1. 12 선고 2019나144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3288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변론 종결 2019. 10. 1

판결 선고 2019. 11. 12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32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 3. 27. 접수 제29995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 . 3. 28. 접수 제30483호로 마친 등기 명 의 인 표시 변경 등 기 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행위로서 수권이 필요 없다는 주장

1)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정관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보존행위이고, C은 원고 대표자로서 정관상 재산을 보존할 책임과 권한이 있으므로 A(피고 명칭인 B으로 종단등록하기 전의 명칭)의 별도 수권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2)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수 없고,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원고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원고에 속한 구성원의 총유이고 그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관 변조 등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실체가 서로 다른 단체인바, 피고가 원고에서 피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정관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특히 피고는 당초의 정관 보칙 제35조를 삭제하여 위 첨부 정관을 작성하는 등으로 원고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위법한 정관변경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정관(갑 제6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정관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정관 보칙 제35조는 '의 부동산은 A 소유재산으로서 A를 영구존속하기 위하여 A 단체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A은 누구를 막론하고 폐원, 변체, 해체할 수 없으며, 이사장은 A의 재산을 보존하여 타인의 침해를 방지할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원고의 정관(갑 제3호증)과 피고의 정관(갑 제6호증)은 일부 조항의 유무나그 내용이 다르고, 특히 원고의 정관에서는 '제8장 보칙'을 두어 대표권의 제한 및 공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서로 다른 정관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정관이 1976. 7.25. 제정되어 2014. 1. 26. 마지막 개정된 것임을 표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원고의 정관은 위와 같은 개정 이후인 2015. 10. 25. 개정된 것임을 표시하고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당초의 정관 보칙 제35조를 삭제하여 정관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2014. 1. 26.에 개정된 정관에는 보칙 제35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칙 제35조의 주요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이 A의 재산임을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그 재산을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A은 누구를 막론하고 폐원, 변제,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와의 분쟁 이후에 원고의 정관(갑 제3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의 정관(갑 제3호증)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가 보칙 제35조 제3호 등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등기신청이 각하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피고가 다시 적법하게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의정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판사 이완희판사 홍지 영